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3,500



2016년 12월 현재, 서울시에
약 3,500개의 사회적경제 기업
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70



2016년 12월 현재, 서울시에
약 70여 개의 네트워크 및 인프
라가 사회적경제 기업 활동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1 + 25



2016년 12월 현재, 서울시에
광역단위 지원사업 외에도 25개
자치구별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
습니다.

구분	주요사업
판로지원	공공시장 확대지원(공공구매영업지원단, 함께누리몰, 자치구 박람회 등) 민간시장 판로지원(B2B영업, 유통채널/생협매장 입점, 디지털마케팅 지원 등)
경영지원	컨설팅 및 일상경영지원 (컨설팅/경영멘토, 회계/세무/법률지원, CI공모, 우수기업 지정, D/B 구축 등)
전략사업육성	전략사업 발굴육성 및 연구개발 (협동비즈니스 지원, 마을기업 신모델 개발, 전략업종 육성, 거점 매장 등)
지역 및 협동기반 조성	자치구 생태계 조성지원(자치구 지원체계, 특구 육성 등)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설립 전/후 교육, 레벨업 지원, 홍보 및 마케팅 등) 공동작업장/공유자원(지역재생리빙랩/기술혁신랩, 공동작업장, 장터 기자재 대여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부문협력지원사업, 민관/민민 네트워크 지원)
인재양성	아카데미(대학교 연계 과정, 업종별 맞춤형 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등) 인재양성 해외연수(전략기획/기술연수) 신규주체 발굴(청소년 사회적경제 주체양성, 협치서울 의제사업 등)
홍보 및 연구사업	시민소통 및 인식제고 (온라인 포털, 뉴스레터, 사회적경제 한마당, 칼폴라니 국제학회, 공정무역의 날 등) 정책개발 기획연구(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연구 등)
SE진입지원/재정지원 (부처 및 지자체 등 연계)	사회적기업 인증/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마을기업 지정, 협동조합 설립 등 인증/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사업개발비, 보험료 등 혁신형사업 지원 사회적금융 연계(사회투자기금 융자,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보증)

※ 세부 사업내용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포털(www.sehub.net) 알림마당 및 지원사업 연간 일정 참조

사회적경제 부문별 협업체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23길 25, 상가동 302호
W. http://www.seouljahwal.or.kr
T. 02.793.2579
E. seoul-jahwal@hanmail.net

서울사회적기업협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W. http://sewith.or.kr
T. 070.4367.6356
E. seoulcse@gmail.com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W. http://cafe.naver.com/maeulse
T. 02.352.5846
E. maeulse@hanmail.net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W. http://www.seoulcoop.org
T. 02.351.3168
E. seoulcoop@hotmail.com

서울특별시
I·SEOUL·U

니와 나의 사회적경제
나의

사회적경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찾아오는 길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지하철

3,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서
홍제 방면으로 도보 3분

버스

불광역, 불광1동주민센터 하차
간선 471, 701, 703, 704, 705, 706, 720
지선 7022, 7211, 7212, 7720
마을버스 은평02, 은평04, 은평07 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사회적경제는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 활동입니다.

- 공동체 보편 이익 실현
-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 민주적 참여
-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구분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목적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기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	기업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수요 부응
관련법 (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마을기업육성지침	협동조합기본법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지원기관 (광역)	서울광역자활센터	(사)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사)신나는조합
비고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 모든 참여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임금지급	배분가능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지역형) 지정제도 시행	출자자 및 고용인력 70%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 (5인일 경우 100%)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 (법인) 출자 및 경영참여	자발적 개방적 조합원 (1인 1표의 원칙) 일반협동조합(신고제) 사회적협동조합(인가제)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자활기업의 종류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설립요건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 창업으로 자활기업이 아님)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상 조합설립 절차에 따름

지원요건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모든 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해 시장 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임금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 자활기업 근로일수의 조건이행 기준 충족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H 이상) / 주당 평균 4일 이상(총 22H 이상) 근로에 종사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 동일성 유지
- '창업 전 교육' 및 '경영자 과정' 이수

지원내용

- 창업자금 지원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자활기금)
- 국·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우선 위탁 및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 한시적 인건비 지원 (수급자 최대 5년/ 비수급 자활근로참여 자활기업 인정 후 초기 6개월/전문가 최대 5년)
-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
- 인정 후 3년 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 (최대 5천만원)
- 사업개발비 지원 및 우수 자활기업 지원

상담 및 문의처 서울광역자활센터 02.318.4140 www.sjahwal.or.kr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취약계층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사회에 부족한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는 기업

유형 및 종류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주민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빈곤, 소외, 범죄 등 지역 사회문제 해결 지역 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컨설팅, 마케팅, 금융 지원
혼합형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근로자, 수혜자 각 20% 이상)
기타형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지정)요건

구분	사회적기업(인증)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자격부여	고용노동부	서울시 / 관련부처
인증/지정 요건	1. 조직형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2.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6개월 이상)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노무비*50%) 6.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7. (상법상 회사)배분 가능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좌동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3개월 이상) 좌동 해당없음 좌동
신청	연중접수(격월을 원칙으로 실시)	연중 1~2차 일정공고
자격기간	인증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최대 3년

지원내용

지원제도 및 내용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부지/시설비 지원	모태펀드	세제/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 기업	○	○	○	○	○	○	○	○
예비 사회적 기업	○	○	○	○	-	△	○	-

상담 및 문의처 사단법인 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02.365.0330 www.joyfulunion.or.kr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에 기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을 통해 주민의 욕구 및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 및 종류

마을기업 (신규 및 2차년도)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및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신유형 마을기업	새롭게 등장하는 지역공동체 이슈에 대응하고 창의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도시형 등 신유형 마을기업
유통형 마을기업	마을기업 제품 판매 및 판로확보(광역 1개소)
예비 마을기업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마을 및 단체로서 광역자치단체가 심사 및 지정

지정요건

- 기업성**
 - 사단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으로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출자
 - 시장경쟁력 있는 사업을 통해 수익창출, 손실 충당 및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 적립기준 충족
- 공동체성**
 -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노력 실천
 - 모든 회원은 출자자인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업 운영에 참여
 - 최소 5인 이상의 지역 주민이 마을기업에 출자(10인 이상 출자 권장)
- 공공성**
 -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 실현(지역사회공헌활동 필수 이행)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은 50% 이하
 - 현행법을 준수, 특정 정당 및 후보 지지활동 금지 / 민주적 절차에 의한 사업계획 및 운영
- 지역성**
 -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사업 수행
 - 출자자, 고용인력의 70%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단, 출자자 5인일 경우 출자자 모두는 주민)

설립 전 교육(5인 이상, 24H), 전문과정(2차년도/우수마을기업 신청기업, 3인 이상, 4H) 필수 이수
기초자치단체 적격검토(1차) ▶ 광역자치단체 심사(2차) ▶ 행정자치부 심사(3차)

지원내용

- 사업비지원 : 신규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총 8천만원 한도 사업비 지원 (자부담 20% 이상)
※ 인센티브 : 행정자치부 선정 우수 마을기업(사업비 추가지원), 스타 마을기업 등
- 자립 및 성장지원 : 경영컨설팅, 교육, 박람회 개최, 판로지원, 멘토링, 홍보·마케팅 등

상담 및 문의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353.3553 www.sehub.net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정의]

협동조합 구분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목적	조합원의 필요 충족	사회목적 실현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유형	사업자, 다중이해관계자, 직원, 소비자	반드시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없음(금융·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배당	손실금 보전 및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적립 이후 잉여금에 대한 배당가능(이용배당_전체배당액의 50% 이상/출자배당_총출자금의 10% 미만)	배당불가
청산	채무를 제한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부채 및 출자금을 제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국고 중 하나에 귀속

유형 및 종류

사업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사업자가 주인이 되어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사업 영위 (공동판매, 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딩 및 마케팅 등)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 (동물병원, 사회서비스, 언론 등)
직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직원이 직접 조합을 소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의식업, IT개발자, 운송업 등)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 공동이용 (공동육아, 주택, 와인구매 등)

지원내용

- 상담지원 : 설립 및 경영상담(전화/내방 분야별 맞춤 상담, 설명회 등)
- 기반조성 : 협동조합 교육, 생태계 조성, 주체 확산 등
- 성장지원 : 협동조합 설립 지원, 협동조합 경영지원, 시장진입 지원
- 홍보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지원(홍보물 발간, 정보제공, 사례 확산 등)

상담 및 문의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1544.5077 www.15445077.net
사단법인 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02.365.0330 www.joyfulunion.co.kr